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술지주회사 공동설립 주체 범위 확대〉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99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7.
3. 회부연월일 : 2023.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는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부산, 대구·경북, 포항 등 7개사로 설립 초기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창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에 현금출자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중이 증가하여 ‘산학협력단 등이 50%의 주식 보유 비율(제36조의2)’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

36조의2, 제36조의5).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하고,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가 대학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했던 의무를 재량화하고, 대신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학--

현행	개정안
<u>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② (생략)	----- -----. ②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1.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 범위 확대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25조¹⁾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지칭함.

이는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여 투자와 고용을 유발하고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가와 경제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7년 산학협력법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연구역량의 핵심인 지역대학이 사업화 가능 우수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산업과 연계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지주회사 육성을 위해 지역 테크노파크를 통해 연합 기술지주회사에 출연금, 출자금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²⁾

< 지역 테크노파크 출자현황 >

(‘23년 12월 기준, 단위 : 백만원)

순	회사명	설립일	지역 TP출자 (누적)	비고
1	강원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2009.4월	398	
2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2011.4월	4,208	
3	대경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2014.11월	2,800	
4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2015.9월	8,000	
5	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2016.9월	3,500	
6	포항연합기술지주	2017.12월	399	
7	전남지역대학연합창업기술지주	2018.10월	2,625	

그러나 현행법은 산학협력단등(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 각 기관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것을 설립요건으로 규정하며³⁾, 설립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⁴⁾

2) 출연금은 지주회사 운영비로, 출자금은 자회사 설립(지분편입 포함)에 집행하고 있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6조의2제4항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 제36조의6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라, 지역 테크노파크로부터 지원받은 출자금에 따라 설립주체인 산학협력단 등의 보유지분이 감소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부산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도 부산테크노파크의 현금출자 비율이 과다해져 2022년 출자받은 금액을 전액 반납한 바 있음.

< 부산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출연 및 출자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부산	현금출자	1,250	1,250	1,250	1,250	1,750	1,250	*	-	8,000
	현금출연	1,250	1,050	1,050	1,050	1,600	690	1,150	1,350	9,190
TP	소계	2,500	2,300	2,300	2,300	3,350	1,940	1,150	1,350	17,190
대학	현금출자	1,140	580	580		270	106		-	2,676
	현물출자	136	739	296	1,799	1,265	1,314		-	5,549
	소계	1,276	1,319	876	1,799	1,535	1,420		-	8,225

* 2022년 출자받은 금액 전액 반납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주체에 공동설립 기관도 포함⁵⁾이 되는바,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출연하는 기관도 기술지주회사 설립기관으로 추가하여 출자로 인해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벌대학 사업 등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그러한 노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동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고 있음.⁶⁾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공동설립 시 100분의 50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상 취득 주체를 산학협력단에 한정⁷⁾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설립기관이 되어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그 지분은 증여세 면제 요건에는 합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증여세 면제를 위한 지분 요건 산정 시 산학협력단 외의 설립 주체도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교육부는 지자체 등이 현금을 계속 출자하더라도, 기술지주회사 인가요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에 지자체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고려대학교는 국가, 지자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기술지주회사를 공동설립 시, 국가·지자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은 연구기관이 아니므로, 이익배당 시 연구활동에 대한 채투자 등이 경시될 우려가 있고,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산학협력단 지분이 50% 미만인 경우 증여세 부과 의무 발생 우려가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상호를 재량으로 결정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제1항⁸⁾은 단독 및 공동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 때 단독과 공동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기술지주회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을 명칭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회사 명칭에 기관의 명칭을 모두 표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사 명칭과 상당히 상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일부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10개가 넘는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에 참여함에 따라 현행법과 같이 모든 대학의 명칭을 기술지주회사명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 공동형 기술지주회사 현황 >

기술지주 회사명	공동 설립기관	설립 인가일
강원지역 대학연합	①강원대, ②한림대, ③상지대, ④강릉원주대, ⑤가톨릭관동대, ⑥연세대(원주캠퍼스)	2009.4.
전북지역 대학연합	①전북대 ②군산대 ③원광대 ④우석대 ⑤전주대	2011.4.
대경지역 대학연합	①영남대 ②경운대 ③경일대 ④계명대 ⑤금오공과대 ⑥대구대 ⑦대구가톨릭대 ⑧대구한의대 ⑨동국대(경주캠퍼스) ⑩동양대 ⑪안동대	2014.11.
부산지역 대학연합	①동의대 ②부경대 ③동아대 ④동명대 ⑤부산대 ⑥신라대 ⑦인제대 ⑧한국해양대 ⑨동의과학대 ⑩경성대 ⑪동서대 ⑫부산외대 ⑬경남정보대 ⑭부산과학기술대 ⑮부산가톨릭대 ⑯영산대	2015.8.
광주지역 대학연합	①남부대 ②광주대 ③광주여대 ④전남대 ⑤조선대 ⑥호남대	2016.9.
포항연합	①한동대 ②선린대 ③포항대	2017.12.
전남지역 대학연합	①목포대 ②동신대 ③목포해양대 ④순천대 ⑤전남과학대 ⑥전남도립대	2018.9.
엔포유 대학연합	①아주대 ②국민대 ③단국대 ④서울과기대	2016.6.
고려대	①고려대 ②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2009.8.
연세대	①연세대 ②학교법인 연세대학교	2011.4.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공동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기관명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대신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8

※참고자료 : 기술지주회사 설립현황('23.12.)

○ 총괄

구분	지주회사 수	자본금(백만원)			자회사 수 (누적)	비고
		현금	현물	계		
단독형	72	127,813	54,014	181,827	1,311	
공동형	10	52,146	27,670	79,816	434	
계	82	179,959	81,684	261,643	1,745	

※ 관·별 현황 수도권(32, 39.0%), 충청권(14, 17.1%), 부울경(11, 13.4%), 호남권(10, 12.2%), 대경권(9, 11.0%), 강원(4, 4.9%), 제주(2, 2.4%)

○ 단독형

기관명		자본금 (백만원)			자회사 수 (누적)	설립인가월
		현금	현물	계		
1	서울대	15,270	4,732	20,002	46	2008-10
2	국민대	25,939	918	26,857	39	2018-06
3	한양대	6,648	3,669	10,317	35	2008-07
4	부산대	3,405	4,789	8,194	37	2010-02
5	포항공과대	5,100	2,017	7,117	24	2012-04
6	전남대	2,383	3,417	5,800	51	2011-04
7	거국대	3,476	2,658	6,134	17	2013-12
8	경북대	4,234	1,048	5,282	35	2013-06
9	서강대	477	229	706	19	2009-01
10	인천대	2,339	1,698	4,037	34	2009-11
11	연세대바이오헬스	4,000	1,321	5,321	7	2021-07
12	동국대	1,369	1,996	3,365	17	2010-02
13	충남대	4,550	756	5,306	44	2017-03
14	한림대	2,730	1,382	4,112	5	2020-07
15	충북대	1,911	620	2,531	32	2016-01
16	한국공학대	2,184	693	2,877	18	2013-12
17	성균관대	1,300	1,458	2,758	13	2012-04
18	한양대에리카	1,600	733	2,333	18	2013-06
19	울산대	1,703	627	2,330	7	2012-07
20	이화여대	1,800	779	2,579	11	2016-06
21	한밭대	725	1,518	2,243	78	2013-12
22	가톨릭대	1,300	1,021	2,321	16	2012-04
23	세종대	1,450	643	2,093	5	2012-04
24	제주대	1,100	740	1,840	16	2012-07
25	송실대	1,250	749	1,999	7	2017-09
26	동아대	1,130	649	1,779	31	2012-04
27	중앙대	1,195	513	1,708	10	2013-12
28	한남대	770	859	1,629	41	2013-08
29	조선대	1,049	510	1,559	18	2010-10
30	숙명여대	820	696	1,516	6	2016-06
31	국립부경대	600	865	1,465	14	2013-12
32	서울과학기술대	1,600	130	1,730	12	2018-06
33	강원대	1,536	130	1,666	35	2014-06
34	인제대	1,030	352	1,382	38	2018-09

기관명		자본금 (백만원)			자회사 수 (누적)	설립인가월
		현금	현물	계		
35	국립한국해양대	834	507	1,341	41	2014-11
36	전북대	1,400	280	1,680	14	2018-12
37	아주대	1,510	109	1,619	13	2021-07
38	영남대	1,800	298	2,098	6	2020-07
39	순천향대	350	744	1,094	35	2014-06
40	경상국립대	1,676	411	2,087	25	2016-06
41	가톨릭관동대	783	419	1,202	15	2017-06
42	경희대	531	475	1,006	16	2009-04
43	서울시립대	800	300	1,100	4	2017-12
44	대구대	620	266	886	23	2017-09
45	호서대	330	500	830	13	2017-12
46	한국교통대	570	363	933	12	2017-06
47	동신대	200	474	674	3	2010-09
48	제주한라대	500	141	641	1	2020-08
49	명지대	390	218	608	13	2016-01
50	한국기술교육대	314	298	612	14	2016-01
51	대전대	439	253	692	20	2017-06
52	가천대	642	246	888	10	2017-03
53	단국대	421	188	609	16	2010-09
54	창원대	450	105	555	6	2018-06
55	세한대	470	31	501	2	2016-06
56	공주대	350	155	505	11	2017-03
57	금오공과대	700	150	849	21	2022-01
58	전주대	400	100	500	23	2019-07
59	국립순천대	200	200	400	1	2020-12
60	인하대	567	120	687	4	2017-12
61	한국예술종합대	135	267	402	3	2017-03
62	대구한의대	524	46	570	29	2017-09
63	선문대	100	246	346	7	2016-06
64	동의대	200	295	495	23	2020-12
65	군산대	200	114	314	22	2018-09
66	한국영상대	205	95	300	1	2022-06
67	동서대	300	160	460	2	2022-09
68	광운대	244	85	329	3	2019-03
69	삼육대	125	99	224	5	2008-10
70	한경대	60	80	140	2	2016-01
71	경일대	150	98	248	9	2023-01
72	건국대글로벌	350	163	513	7	2023-01
계		127,813	54,014	181,827	1,311	

○ 공동형

기관명	자본금 (백만원)			자회사 수 (누적)	설립인가월
	현금	현물	계		
1 고려대	12,210	8,290	20,500	61	2009.08.
2 연세대	10,060	6,454	16,514	45	2011.04.
3 부산지역대학연합	10,676	5,550	16,226	43	2015.09.
4 전북지역대학연합	4,992	1,950	6,941	24	2011.04.
5 대경지역대학연합	4,444	2,228	6,672	68	2014.11.
6 광주지역대학연합	4,700	1,415	6,115	40	2016.09.
7 전남지역대학연합	3,175	665	3,840	27	2018.10.
8 엔포유대학연합	920	395	1,315	66	2016.06.
9 강원지역대학연합	450	357	807	56	2009.04.
10 포항연합	520	367	887	4	2017.12.
계	52,146	27,670	79,816	434	